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동구 제5선거구,

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영철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건물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,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(건축법령의 위임)이 없는 실정입니다.

○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,

국토부에서는 현재까지 미답변인 상황입니다.

- 이에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 내에 규정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관리함으로써, 도시 미관 유지, 통풍 및 채광 확보 등 건축선 지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.
- 한편,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‘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’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·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‘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 다양한 기관의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 모여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바, ‘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’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- 이를 통해 협의회 개최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일 수 있으며, 신속한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